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3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10.
3. 회부연월일 : 2026.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 「건축법」 사이에, 중복된 절차인 공작물 축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로 일원화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편의의 증진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동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던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작물 축조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상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조의3(허가·신고 등의 의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은 「건축법」 제14조 및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이나 광고판 등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²⁾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³⁾는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탑이나 광고판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⁴⁾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선에서 혼란이 있었으나,⁵⁾

2)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않으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않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4)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이와 관련하여 2025년 5월 경기도 부천시는 높이 4미터를 넘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을 확인함이 없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이하영 기자, “옥외광고물 관리로 기관경고 받은 부천시”, 2025.06.18. 부천일보,

「건축법」 제83조제1항은 공작물 축조 신고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 및 단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건축신고 절차의 준용 여부에 관하여 한정하여 해석함이 적절하므로,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탑·광고판은 공작물 축조신고의 대상이나 이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임.⁶⁾

따라서 높이 4미터 이하의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없이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 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으나,

높이 4미터 초과인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 외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 상황임.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http://www.mypuchon.com/mob/news.html?news_num=40440, 2026.07.10. 최종확인.

6) 법제처도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등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외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는 유권해석 입장을 내놓은 바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4-0340)

다만,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효력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행령에 의하여 법률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인허가 의제 효력의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이 적절한 측면이 있겠고,

인허가 의제 효과의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상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을 직접 인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서류 제출 등 신고 의제 절차를 함께 규정하며, 부칙에는 기존 신고가 누락된 광고물에 대한 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350